

Issue Brief

August 2024

가상자산 규제 · 수사대응팀
Virtual Asset Regulation/
Investigation Response Team

CONTACT



변호사 박광배

T: 02.6386.7910

E: kbc@leeko.com



변호사 김형근

T: 02.772.4449

E: hyongkun.kim@leeko.com



변호사 권태경

T: 02.772.4759

E: taekyoung.kwon@leeko.com



변호사 이정명

T: 02.6386.0730

E: chloe.lee@leeko.com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불공정거래 규제 주요 내용

2024년 7월 19일자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명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내용 중 특히 불공정거래 규제 관련 세부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새롭게 시행된 법률은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자기/특수관계인 발행 가상자산 거래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엄중한 처벌이 따릅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은 이러한 불공정거래 규제 조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금융당국의 규제 조직 정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발맞춰,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엄격히 조사하고, 발견된 위법 행위에 대해 신속한 조사를 통하여 엄중히 제재를 가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에 대한 대응 체계를 대대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 조직 신설

최근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금융감독원(금감원) 내에 각각 가상자산과와 가상자산조사국 및 가상자산감독국이 신설되었습니다. 지난해 서울남부지검에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설치된 데 이어 이루어진 추가적인 조직 확대로 볼 수 있습니다.

■ 매매분석 플랫폼

2024년 상반기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매매분석 플랫폼이 구축되었습니다. 이 플랫폼은 실시간 거래 분석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협력 체계 강화

- 2024년 7월 1일, 가상자산시장조사기관협의회가 가동되었습니다. 이 협의회는 금융위, 금감원, 검찰 등 여러 기관의 협력을 강화하여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조사합니다. 금감원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다섯 차례에 걸친 합동 워크숍을 통해 협력 체계를 공고히 다졌습니다.

- 2024년 6월 27일, 금감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간의 조사 협력 업무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협약은 IT 기술을 활용한 불공정거래 대응을 목적으로 합니다.

■ 이상거래 상시감시 체계 구축

금융당국은 2024년 7월 5일,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상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분석하여 당국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제공합니다.

■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정 및 제재

가상자산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과 유사하게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제1항)

동 규정은 가상자산사업자, 발행자 및 그 주요주주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사업자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교섭하고 있는 자와 그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까지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공개중요정보들의 의미에 관하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제1항에서 추상적으로 단순히 이용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기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의 개념을 상당 부분 차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가상자산 및 그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 바, 이에 대표적인 것으로서 가상자산 거래지원 결정 및 종료 결정을 미공개중요정보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가상자산시장의 특성에 비추어 자본시장법과 다른 미공개중요정보 판단이 될 여지가 있는바, 이에 관하여는 추후 계속된 연구와 판례를 통해 미공개중요정보의 개념을 확립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시세조종 금지(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3항)

동 조항들은 위장거래에 의한 시세조종과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자본시장법에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주식시장에서의 시세조종과 유사하게 판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가상자산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사안별 검토의 필요성도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규율대상으로 하는 시세조종행위는 가상자산시장에서의 인위적인 가격 형성을 조종하는 행위가 그 대상이므로 규제대상장소는 가상자산시장이라고 해야 할 것인데, 현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장내시장과 장외시장을 구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장외거래도 그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부정거래행위 금지(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제4항)

동 조항은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 또는 기재 누락 등 외에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의 사용 등 구체적 행위를 규정하지 않은 부정거래행위도 포괄적 사기금지조항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역시 기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 금지의 법리와 판례를 따라 판단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①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②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③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④ ①부터 ③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는 부정거래행위로서 금지됩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과 달리 가상자산 부정거래행위 유형에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는 행위가 빠져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포괄적인 조항인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금지되는 것인지 여부는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반시의 제재

가상자산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규정하면서, 부당이득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시장법과 마찬가지로 부당이득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도 부과하도록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별표1에서 부당이득 산정방식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자본시장법의 부당이득 산정방식과 유사하지만,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한 사항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거래 시간이 정해져 있는 자본시장과 다르게 가상자산 시장은 24시간 동안 거래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종가'의 개념 대신 '기준가격'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기준가격'에 대하여 0시, 8시, 16시의 가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 자산의 매매 등(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제5항)

이는 가상자산시장만의 특성을 고려하여 불공정거래 행위를 추가한 규정입니다.

동 사항에 대하여는 과징금 없이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이해관계가 있는 가상자산을 직접 매매하지 못하게 한 것인데, 가상자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 등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시세조종행위 등과 달리 매매 그 자체만으로 위법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관련 형사법적 규제

가상자산과 관련된 형사법적 이슈는 크게 가상자산의 '발행', '상장', '불공정거래' 관련 범죄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도 가상자산 범죄를 위와 같이 구분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가상자산 발행행위 관련

가상자산 발행행위와 관련하여서는 가상자산의 실체가 없거나 부실한 '불량코인 발행', 가상자산 발행, 채굴 사업 등을 빙자하여 다단계 또는 리딩방을 통해 투자금을 편취하는 '코인 다단계' 등이 있고, 이와 관련해서는 형법상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반 여부로 접근하여 왔습니다.

■ 가상자산 상장행위 관련

가상자산 상장행위와 관련하여서는 가상자산 발행업자로부터 가상자산 선취매 등 수익을 받고, 거래소 담당자에게 상장 청탁 명목 금품공여 및 수수 즉, 이른바 '대가성 있는 상장 수수료', 가상자산의 인위적 시세 부양을 위해 발행업자와 MM 업자를 상호 중개하며 수수료를 취득하는 '불법 Market Making 중개'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형법상 배임수증재죄 성립 여부,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로 접근하여 왔습니다.

■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관련

가상자산 불거래행위와 관련된 형법적 이슈에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등 증권 범죄와 유사한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기존 자본시장법의 경우 '증권'의 경우에 한하여 규제가 가능하였기 때문에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증권성 여부에 관한 논란으로 규제의 공백이 있어왔는데, 이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으로 기존 자본시장법의 규제

내용과 유사한 방식으로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불공정거래 위험성이 높은 자기발행 가상자산의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한층 더 두텁게 이용자를 보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전에는 가상자산의 인위적 시세 부양을 위해 발행업자와 MM(Market Making)업자를 상호 중개하며 수수료를 취득하는 불법 Market Making을 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의 성립을 고려하였으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시세조종 금지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형법상 업무방해죄 보다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 방법 및 조치 절차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시장이 초국경성(복수국가, 복수 거래소 등 거래량 분산으로 시세조종 세력에 취약), 24시간 거래(폐장시간의 시장 진정효과가 없고, 거래량이 적은 야간 시간대의 시세조종행위 가능), 공시정보 미약(발행백서의 구체성, 진실성 불확실 등) 등의 특징으로 인하여 불공정거래 행위 발생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가상자산과 9명) 및 금감원(가상 자산조사국 3팀, 16명)에 조사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조사결과를 심의하기 위한 자문기구로서 가상 자산시장조사심의회(가조심)를 금융위원회에 마련함과 동시에, 혐의자의 도주,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Fast track의 법적 근거도 마련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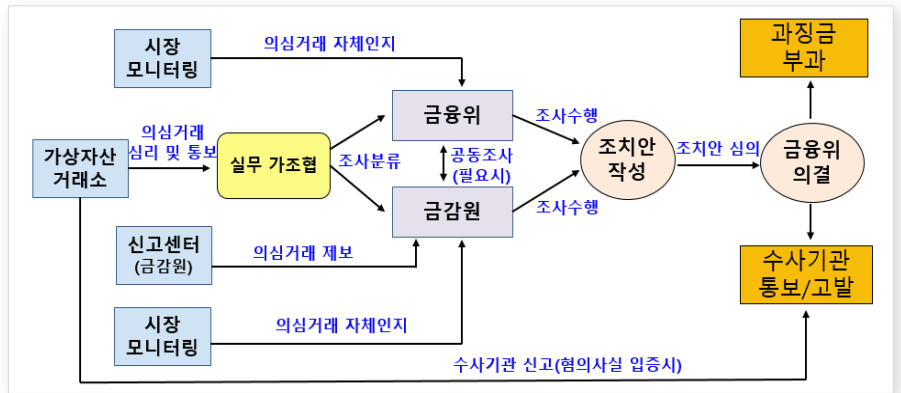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보장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방법으로는 자본시장법의 불공정 거래 행위 조사방법과 동일하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혐의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진술서 제출 및 출석문답 요구 등을 할 수 있으며, 금융위는 추가로 장부, 서류, 물건의 영치 및 현장조사의 조사방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금감원과 금융위의 조사 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필요시 두 기관간의 공동조사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방법]

업무 구분	근거조문	자본시장조사 업무와의 비교	조사기관
장부 · 서류 및 물건 조사	가상자산법 §14①	자본법 §426①	금융위, 금감원
장부 · 서류 및 물건의 제출요구	가상자산법 §14②	자본법 §426②	금융위, 금감원
혐의자 진술서/출석요구 및 문답	가상자산법 §14②	자본법 §426②	금융위, 금감원
현장조사/장부 · 서류 및 물건 영치	가상자산법 §14③	자본법 §426③	금융위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의 조사업무 절차는 1) 불공정 의심거래 인지, 2) 조사실시, 3) 조치안 마련 및 금융위 의결 등 3단계로 진행됩니다.

- 1) 불공정 의심거래의 인지:** 총 3-track을 통해 불공정거래 의심거래를 인지하고 있는데, ① '이상 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출-심리한 의심거래를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통보받거나, ② 신고센터(금감원)를 통한 제보 및 ③ 금융당국이 직접 온·오프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자체·인지할 수 있습니다.
- 2) 조사실시:** 불공정거래 혐의 성격에 따라 자료조사, 문답조사, 현장 자료영치, 포렌식 등 다양한 조사기법을 활용하여 불공정거래 혐의를 조사하게 됩니다.
- 3) 조치안 마련 및 금융위 의결:**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고발, 수사기관 통보, 과징금부과, 경고, 주의의 5단계로 조치단계를 구분하여 조치안을 마련하여 혐의자에게 조치에 대하여 사전통지 하고, 가조심 심의 및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되게 됩니다. 다만,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사전통지 절차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고발 및 통보 등 형사제재와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제재는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 시사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은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 법률은 다양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여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의 시행과 관련하여 여러 법적 쟁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무엇보다 금융당국의 강화된 조사 체계에 대비해야 합니다. 법 시행 후 금융당국은 이상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행위자를 철저히 조사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 관련 기업은 이러한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 전략을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가상자산 발행자와 마켓메이커는 기존에 문제가 되지 않았던 행위나 거래가 이번 법률 시행 이후에는 법적 문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규제 환경에 맞춰 모든 거래와 행위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법률 자문을 통해 사전 예방적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발행백서나 기타 공시서류에 대한 허위 기재나 누락은 이전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이제는 부정거래행위로 간주되어 엄격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행백서 작성 시 더욱 신중을 기하고,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가상자산의 불공정 거래와 관련된 규제가 어느 정도 명확해지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가상자산의 발행 및 상장과 관련된 이슈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함께 형법상 사기죄, 배임수증재, 업무방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여부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법문언상 불명확한 부분에 관하여 관련 판례와 법리가 확립되기 전까지는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가상자산 규제 · 수사대응팀은 광장의 금융규제팀, 형사팀, 디지털금융팀 등 관련 팀의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가상자산 관련 각종 규제 및 감독당국의 검사·조사, 그리고 수사기관의 수사와 관련한 각종 법률 이슈에 대하여 자문하고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의 가상자산 규제 · 수사대응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법무법인(유) 광장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를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

뉴스레터 더 보기